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38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5.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그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 등을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청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만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주도할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청년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청년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 제출) ① 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 제출) ① ----- -----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청년처장</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청년처) ① <u>청년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둔다.</u> ② <u>청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청년처장이 각각 승계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2. 교육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6.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7.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8.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또는 청년처
교육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또는 청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청년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청년처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개정안
		또는 청년처
고용노동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청년처
여성가족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 또는 청년처
국토교통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청년처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청년처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청년처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총리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청년처장의 행위 또는 청년처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년처, 청년처장 또는 청년처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연령별 실업률을 살펴 보면, 2019년~2023년 15~29세의 실업률은 5.9%~9.0%로 전체 연령의 평균 실업률인 2.7~4.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으며, 2024년 5월 기준의 통계에서도 전체 평균인 3.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6.7%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연령별 실업률 현황(2019~2023년, 2024년 5월)]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5.
15~29세	8.9	9.0	7.8	6.4	5.9	6.7
-15~19세	8.6	8.7	8.7	6.5	5.5	7.5
-20~29세	8.9	9.0	7.7	6.4	5.9	6.7
30~39세	3.3	3.5	3.3	2.7	2.6	2.9
40~49세	2.3	2.5	2.4	2.0	1.9	2.2
50~59세	2.5	2.9	2.6	1.7	1.7	2.0
60세이상	3.4	3.6	3.8	2.8	2.6	2.4
계	3.8	4.0	3.7	2.9	2.7	3.0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또한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른 2022년도 임금근로일자리 연령대별 월 평균소득 및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19세 이하의 78.3%, 20대의 20.8%, 30대의 10.9%는 월 최저임금(2022년 기준 1,914,440원¹⁾)에 미치지 못하는 15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있으며, 150만원~250만원 미만인 소득구간의

1)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을 월 209시간[{법정근무시간(주40시간)+주휴시간(8시간)}×월평균 주수 4.34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비율이 19세 이하의 16.0%, 20대의 32.6%, 30대의 18.9%로 동 소득구간에서도 상당수는 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연령대별 월 평균소득 및 소득분포]

(단위: 만원, %)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평균	2022년	353	92	255	379	438	415	243
소득 구간	85만원 미만	12.9	<u>63.0</u>	<u>13.3</u>	<u>6.0</u>	7.6	11.0	26.1
	85~150만원 미만	9.1	<u>15.3</u>	<u>7.5</u>	<u>4.9</u>	7.0	10.0	16.2
	소 계	22	<u>78.3</u>	<u>20.8</u>	<u>10.9</u>	14.6	21	42.3
	150~250만원 미만	24.1	<u>16.0</u>	<u>32.6</u>	<u>18.9</u>	19.8	23.5	29.3
	250~350만원 미만	18.8	4.2	27.9	24.9	15.9	15.7	12.5
	350~450만원 미만	10.9	0.8	10.5	18.3	12.0	8.5	4.9
	450~550만원 미만	7.2	0.4	4.1	11.1	10.6	6.2	3.1
	550~650만원 미만	5.0	0.2	1.9	5.7	9.0	5.2	2.0
	650~800만원 미만	5.1	0.0	1.4	4.6	7.6	8.1	2.1
	800~1,000만원 미만	3.3	0.0	0.6	3.1	4.8	5.3	1.8
	1,000만원 이상	3.7	0.0	0.2	2.5	5.8	6.6	2.1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청년²⁾층의 높은 실업 및 낮은 소득 수준과 관련하여, 관련 연구들은 경제 위기 이후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구조의 변화, 저성장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청년층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전 세대와 달리 자립기반 형성이 어려워 사회적 약자로 위치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7. (생략)

청년층의 고용악화 현상은 초기 청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높은 등록금, 낮은 취업률, 주택 가격 상승 및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등이 청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만혼 또는 비혼의 요인이 되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며 미래의 소득 불평등 심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청년층과 관련된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³⁾.

현재 청년층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및 기능을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총괄·조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⁴⁾하고,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5개 기관⁵⁾에서 각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⁶⁾을

3) 이태진·김태완·정의철·최은영·임덕영·윤여선·최준영·우선희,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참고

4)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⑤ (생략)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청년정책조정실장) ①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청년기본법」 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
4.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5.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2024년도 기준(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 2024.3.29.)

6)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

시행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⁷⁾하고 있음.

[중앙행정기관별 청년정책 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개, 억원)

기관명 (과제 수 순)	과제 수						예산	
	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2023년	2024년
국토교통부	40	8	23	6	1	2	103,236	115,118
교육부	39	2	2	33	1	1	60,589	64,236
문화체육관광부	37	8		13	15	1	3,025	1,6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	10		24			3,739	3,060
고용노동부	32	26		5		1	43,297	43,986
중소벤처기업부	28	21		6		1	5,969	6,724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7)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⑨ (생략)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법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④ (생략)

기관명 (과제 수 순)	과제 수						예산	
	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2023년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20	11	1	6	1	1	7,786	10,794
국무조정실	13	1				12	343	740
여성가족부	9	3		1	5		276	372
보건복지부	9				9		2,519	3,015
금융위원회	7	1	2		4		7,430	3,832
외교부	7					7	491	793
환경부	7	2		2	1	2	510	476
산업통산자원부	6	3		3			1,933	2,241
산림청	6	3		2		1	18	70
식품의약품안전처	6			5	1		75	102
해양수산부	5	2		3			51	52
특허청	5	2		3			92	99
국방부	5	2		1	2		7,047	10,465
인사혁신처	5	4				1	0	2
국가보훈부	4	2				2	133	68
농촌진흥청	4	2		1		1	88	40
행정안전부	4	1				3	2,078	830
병무청	4	2		1	1		916	1,646
기획재정부	4	1			3		15	0
국가유산청	3	2				1	54	35
국민권익위원회	2	1				1	2	2
통일부	2	1				1	5	7
재외동포청	2					2	-	7
법무부	2	1		1			-	1
방송통신위원회	1			1			3	0
방위사업청	1	1					27	16
통계청	1					1	0	0
공정거래위원회	1					1	4	0
조달청	1	1					2	0
합계	356	124	28	117	44	43	251,753	270,459

※자료: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 2024.3.29.

[청년정책 분야별 과제 수 및 예산 현황]

(단위: 개, 억원, %)

분야	과제 수	예산		
		2023년	2024년	비중
I. 일자리	124	57,731	58,854	21.7
II. 주거	28	104,201	115,911	42.9
III. 교육	117	69,402	75,378	27.9
IV. 복지·문화	44	19,531	19,083	7.0
V. 참여·권리	43	888	1,233	0.5
합계	356	251,753	270,459	100

※자료: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 2024.3.29.

현행 청년정책 총괄·조정, 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⁸⁾이 있고,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청년교육 및 인재양성 등 청년정책 전담행정조직으로 청년청(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설치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입법 건의⁹⁾가 있었으며, 제20대 국회부터 청년처(국무총리 소속) 또는 청년청(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발의¹⁰⁾되어 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입법에 반영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설치함

8) 김성진, “[김성진의 미래한국 서치라이트] 청년은 표가 아니라 미래다/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서울신문, 2023.6.19.

9)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촉구 건의문, 충청남도의회, 2021.9.2.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314호,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2016.12.12.) -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청년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017호,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2020.6.1.)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청년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455호,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2020.6.15.) -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841호,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2020.9.14.) -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으로써,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의 청년 정책을 청년처로의 이관 대상¹¹⁾으로 하고 있는데, 앞(6p)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은 2024년도 기준으로 35개 기관에서 356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¹²⁾. 개정안이 청년에 관한 사무를 청년처에서 통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안 부칙 제2조에 따른 업무 이관 대상 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각 과제의 내용, 현 수행기관 고유 기능과의 밀접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처로의 이관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개정안 부칙 제2조(조직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청년처장이 각각 승계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2. 교육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6.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7.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8.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무

②·③ (생략)

12)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4.3.29. 관계부처 합동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청년정책 예시(2023년도 우수기관)]

우수기관	주요 정책
행정안전부	▲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청년마을) ▲ 청년마을기업 운영 ▲ 지역주도형 일자리
농림축산식품부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 청년 농촌보금자리 ▲ 영농정착지원
고용노동부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 맞춤형 고용서비스 ▲ 공정채용기반 마련
국토교통부	▲ 청년공공주택 공급 확대 ▲ 주거 지원 강화 ▲ 대중교통비 절감
금융위원회	▲ 청년 금융교육 ▲ 청년 자산형성 ▲ 전월세대출 공급
조달청	▲ 청년기업 공공판로 지원 ▲ 청년 고용 우수기업 우대 ▲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통계청	▲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 생애단계별 통계 개발 ▲ 청년층 의식변화 기획보도
병무청	▲ 진로 연계 병역 ▲ 사회복무요원 학업·취업 지원 ▲ 중점육성분야 일자리 지원
특허청	▲ IP 인재 양성 ▲ IP 기반 창업 촉진 ▲ 청년 IP 금융지원 강화
해양경찰청	▲ 교육-일자리 연계 ▲ 건강 증진·문화 향유 ▲ 일터 안전망 강화 및 직장문화 개선

※자료: 2023년도 청년정책 우수기관 발표(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4.6.28.)

둘째,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¹³⁾,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국무총리를

13)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위원장으로 규정¹⁴⁾하여, 국무총리의 청년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정부조직법」에서 청년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청년처의 사무로 규정하는 경우 현행 「청년기본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며, 또한 「청년기본법」에 따른 현행 청년정책수행체계가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¹⁵⁾고, 현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아직 시행 중인바, 일정 기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조정실이 각 부처의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등 현재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청년처와 같은 대상별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다른 정책 대상에 대해서도 유사한 요구가 발생할 수

14)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⑨ (생략)

15) 「청년기본법」은 2020.2.4.에 제정되어 2020.8.5.부터 시행되었음.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9